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매수청구권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도시공원 내 설치가능 시설의 종류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권 확대(안 제34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와 동일하게 지목이 대지인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매수대상토지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안 별표2, 별표2의2)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시설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추가하고, 산림병해충 방제 및 수

목진료 행위는 허가없이 할 수 있도록 함.

- 다.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규제 완화(안 제21조, 안 제22조, 안 별표1)
- 지하에 설치되는 점용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수적인 지상 연결부 시설 등을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하고, 점용허가 없이 할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산림병해충 방제 및 수목진료 행위를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 및 수목진료 행위

제22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출입구, 환기구 등 공원관리청이 해당 지하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제3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가.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 안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동일

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일 것

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별표 1에 제8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별표 1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지하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설치가 불가피한 부대시설	가. 공원 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나.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일부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공원이용자의 안전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

별표 2 제3호가목 중 “수목원 및 유아숲체험원”을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및 도시숲 등”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가목(라)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에 제5호(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해당지역의 풍치·미관·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목조구조물로 설치할 것(구조적인 이유로 목조구조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소재로 설치할 수 있으나, 시설물의 외장은 목재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것)

조물로 설치할 것(구조적인 이유로 목조구조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소재로 설치할 수 있으나, 시설물의 외장은 목재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것)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소재로 설치할 수 있으나, 시설물의 외장은 목재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것)

(2)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 층수는 2층 이하로 할 것

(마)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가설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할 것

(가) 전봇대·전신·송전선로·변전소·지중변압기, 개폐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의 설치에 한할 것

별표 2의2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 및 수목진료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 관한 적용례) 법령의 시행에 따른 적용례에 관한 규정

제3조(∼에 관한 특례) 법령의 시행에 따른 특례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관한 경과조치) 법령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제5조(유효기간) 법령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제6조(다른 법령의 폐지) ① 이 영에 의하여 폐지되는 OO에 관하여는
중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령과 관련된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림의 훼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4. (생략) <u><신설></u>	제21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 병해충 방제 및 수목진료 행위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8. (생략) <u><신설></u>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 ----- ----- ----- 1. ~ 18. (현행과 같음)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출입구, 환기구 등 공원관리청이 해당 지하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제34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매수 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 기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34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① -----

-----.

1. 기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가.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 안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일 것

2. (생략)
② (생략)

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 안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일 것

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 (제23조제2호관련)

점용할 수 있는 대상	구체적 기준
1. 전봇대·전선·변전소·지중변압기·개폐기·가로등분전반·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수소연료공급시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	가. 전선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할 것 나. 변전소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분산형 전원설비는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 및 주차장에 설치할 것 라. 전기통신설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통신관은 그 설비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마. 수소연료공급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시설을 말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설치할 것 1) 소공원 또는 어린이공원에 설치하지 않을 것 2) 주차장에 설치할 것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충족할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가스정압시설·열수송시설·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전력구·송전선로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	가.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제외한다)·전력구 및 송전선로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노폭 5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위험이 많은 장소의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도관의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를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가스정압시설은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하구조물로 설치하여

커)의 설치

3.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선착장의 설치

야 하며 다음의 요건에 모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1) 주변지역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가스정압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공원 또는 어린이공원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 (2) 삭제 <2009.12.31>
- (3)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특별히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할 것
- (4) 도시공원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위에 철망 혹은 산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외부사람이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의 경계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할 것

다. 그 밖에 도시공원 내 설치하거나 설치된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 등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할 것

라. 열수송시설은 지하에 설치할 것.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열수송관을 제외한 열수송시설에 한정하여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마. 공동구의 관리사무소는 도시공원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불가피하게 도시공원 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할 것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하며, 철도 및 궤도는 지하 또는 고가로, 노외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고,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를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 위에 고가로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도로 노면과의 거리를 4.8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외주차장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가. 소공원 또는 어린이공원이 아닐 것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대 · 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 또는 잡종지인 토 지로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일 것 다. 형질변경[정지(땅고르기)와 포장은 제외한다]을 수반하지 아니 하는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설치하고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도시 계획사업이 시행될 때 원상복구가 가능할 것 라. 존속기간이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 까지일 것
4. 취수시설·관개용수로 및 배수시설 등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 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에 한할 것
5. 지구대·파출소·초소·등대·표지의 설치	가. 지구대·파출소의 건축연면적은 43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 치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 군도시공원위원회(시·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군도시공원위 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 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이상의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6. 방화용 저수조·지하대피시설의 설치	나. 지구대·파출소는 소공원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방화용 저수조 및 지하대피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7. 군용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등	군용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불가 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에 한할 것
8. 제2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것	가.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토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될 것

가설건축물의 설치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대 · 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 또는 잡종지인 토 지로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다만,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 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 우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는 지목 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유무에 관계없이 이를 설 치할 수 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전 · 답으로서 농업용수의 고갈,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한 토지
나.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이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 이 전·답으로서 농업용수의 고갈 또는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 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한 토지의 경우에는 66 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존속기간이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까 지일 것	라. 층수는 3층 이하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구조로서 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닐 것
마.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8의2. 제22조제9호의 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	가. 해당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이거나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일 것 나. 존속기간은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 일 것
9. 제2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설치	가.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이 200제곱미터(하나의 공원을 둘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존속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것 가. 존속기간은 1년의 범위 안에서 공원관리청의 조례로 정할 것 나. 허가목적이 교육·종교·예술·과학 및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것일 것
10.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영화상영·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가.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하 “전통사찰”이라 한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국가등록문화재(이하 “문화재”라 한다)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종교시설의 경내지에서 공작물(탑·불상·종각 등 종교목적의 시설만 해당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2)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데에 대지를 정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기존 대지면적의 10퍼센
11.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가.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하 “전통사찰”이라 한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국가등록문화재(이하 “문화재”라 한다)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종교시설의 경내지에서 공작물(탑·불상·종각 등 종교목적의 시설만 해당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2)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데에 대지를 정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기존 대지면적의 10퍼센

	트 범위에서 추가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3) 나목(2)에 따라 전통사찰 및 문화재를 증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조성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 대지면적이 그 건축면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기존 대지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 대지면적)에 기존 대지면적의 30퍼센트(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내인 경우 나. 증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은 기존시설의 연면적의 범위 이내일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종교시설 및 문화재는 각각 다음에 따른다. (1) 연면적이 225제곱미터 이내인 종교시설(전통사찰은 제외한다):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450제곱미터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2) 전통사찰 및 문화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말한다)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다. 건축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할 것(어린이집인 경우에 한한다) 라. 증축 후의 층수가 3층 이내(어린이집인 경우에는 2층 이내를 말한다)일 것 가. 점용허가의 면적은 산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할 것 나. 공원시설의 보존과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2. 지하에 설치하는 운송통로, 창고시설 등의 시설	가.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 부분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나. 점용허가의 면적은 공원 이용객의 통행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면적으로 할 것
13. 제22조제15호의2에 따른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	가.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 부분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나. 점용허가의 면적은 공원 이용객의 통행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면적으로 할 것

14. 제22조제18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	가.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공원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나. 층수는 3층 이하로 할 것
15. 지하 시설물의 관 리·운영을 위하여 설치가 불가피한 부 대시설	가. 공원 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나.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일부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공원이용자의 안전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 5.>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 (제26조관련)

건축물 또는 공작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
1. 공공용 시설	도시계획시설에 한한다. 다만, 다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 및 교량	
나. 철도 및 궤도	철도 및 궤도는 지하 또는 고가로 설치하여야 하고,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 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도로 위에 고가로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하단부와 도로노면과의 거리가 4.8미터 이상 이 되도록 할 것
다. 공중화장실	
라. 선착장	
마. 수도관 및 하수도 관	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 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노 폭 5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위험이 많은 장소의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도관의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공동구(관리사무 소를 포함한다)	(1) 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 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관리사무소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미관을 해치지 아 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입지가 불가 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것
사. 방재시설	방풍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 사방(砂防)설비 및 방조설

아. 기상시설 자. 국가의 안전·보안 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 차.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 물 카. 주차장	비를 말한다. 「기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을 말한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문화재에 한정한다. (1)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중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방식의 지평식(地平式) 주차장만 해당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차 수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나) 그 밖의 자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2) 부대시설로 주차관리를 위한 2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2. 임시건축물 또는 임시공작물 가. 임시건축물 (1)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을 위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경우로서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이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전·답인 토지의 경우에는 농업용수의 고갈,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할 때에 한하여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이 66제곱미터 이하인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2) 사무소 등의 용 도별 가설건축물	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할 때에 한하여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이 66제곱미터 이하인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목적의 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어야 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대, 공장용지, 철도용지, 학교용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로서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은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전·답인 토지의 경우에는 농업용수의 고갈,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할 때에 한하여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이 66제곱미터 이하인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3)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용 가설건축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존속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것. 다만, 관리청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4) 관람·전시용 단 기 가설건축물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 및 공연·영화상영·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존속기간은 1월 이하이며, 연중 6월을 넘지 아니할 것
	(나) 허가목적이 교육·종교·예술·과학 및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일체의 판매행위나 입장료 등의 징수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공사용 가설건축물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를 위하여 사업부지 안에 설치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로서, 존속기간은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로 하고 사용 후 원상복구할 것
나. 임시공작물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 및 공연·영화상영·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공작물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1) 관람·전시용 단기 가설공작물	(가) 존속기간은 1월 이하이며, 연중 6월을 넘지 아니할 것 (나) 허가목적이 교육·종교·예술·과학 및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일체의 판매행위나 입장료 등의 징수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비상재해용 가설공작물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공작물의 설치에 한할 것
(3)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리하는 공원을 관리청이 인정하는 공작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에 한할 것
3. 도시민의 여가활용 시설	도시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500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

	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가. 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및 도시숲 등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산림욕장의 경우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 (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 (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해당 지역의 풍치·미관·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목조구조물로 설치할 것(구조적인 이유로 목조구조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소재로 설치할 수 있으나, 시설물의 외장은 목재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것) (2)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 층수는 2층 이하로 할 것
나. 골프장	(가)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할 것 (나)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한할 것
다. 실외체육시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이하 “생활체육시설”이라 한다) 중 배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나) 부대시설은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를 말하며, 그 건축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중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는 운동시설 및 그 부대시설(관리실,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를 말한다)만 해당한다. (2) 건축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형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육관으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연면적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5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4) 임야인 토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
라. 실내체육시설	
마. 도서관	(1)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의 연면적은 2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바. 청소년 수련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

사. 잔디광장, 피크닉장 및 야영장	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해당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부대시설
4. 체력단련시설	· 보조시설(간이시설만 해당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등산로·산책로·어린이놀이터·간이휴게소 및 쉼터·평행봉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할 것 (나) 간이휴게소는 33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것 (가) 전봇대·전신·송전선로·변전소·지중변압기, 개폐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의 설치에 한할 것 (나) 전선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할 것 (다) 변전소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라) 송전선로는 공원관리청이 소관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군도시공원위원회(시·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군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전력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할 것 (마)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가설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5. 공익시설	
가. 전기관련시설	

나. 가스관련시설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할 것 (가)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에 한할 것 (나) 가스관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가스정압시설은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하구조물로 설치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가스정압시설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규모가 최소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1)의 경우라도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특별히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 3)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가스정압시설은 주위에 철망 혹은 산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외부사람이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의 경계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할 것 4) 그 밖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하거나 설치된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 등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할 것
다. 취수 및 배수시설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에 한할 것
라. 지구대·파출소·초소·등대·표지	지구대·파출소의 건축연면적은 43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도시공원위원

마.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 바. 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등 (1) 군용전기통신설비, 축성시설 등 (2) 전기통신설비(군용설비는 제외한다) 사. 공사의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아. 보건소·보건진료소 자. 수목장림	회 또는 시·군도시공원위원회(시·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군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이상의 면적을 설치할 수 있다. 방화용 저수조 및 지하대피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군용전기통신설비, 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할 것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할 것 가목 내지 바목의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에 한할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보건소·보건진료소만 해당하며,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병설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만 해당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사목3)에 따라 수목장림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른 것 (2) 수목장림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무실, 유족편의시
---	---

	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은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할 것
6. 주택·근린생활시설	취락지구에 한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인 경우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용원·미용원·세탁소·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조산원·탁구장 및 체육도장만 해당한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건축물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기원·당구장·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사진관·표구점·학원·장의사·동물병원·목공소·방앗간 및 독서실만 해당한다]의 신축 및 상호간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규모·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가능하다. 이 경우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도시자연공원구역(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법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도시자연공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결정 당시부터 거주한 자 또는 5년 이상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거주한 자로 한정하며,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되,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상태로 환원하여야 한다.

	(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당시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 있는 토지 1)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당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된 주택 2)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되기 전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설치된 주택 3)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당시 설치된 주택으로서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가 발급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7. 노인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8. 어린이집시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외2] <신설 2018. 12. 11.>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제29조 관련)

1. 산림의 솎아베기
2.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3. 자기 소유 토지의 이용 용도가 과수원인 경우로서 과수목을 베거나 보충해서 심는 행위
4. 농업을 하기 위한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농사를 짓기 위해 논·밭을 가는 등 50센티미터 미만(이 호에 따른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 목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때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되,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논·밭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으로 흙을 깎거나 쌓는 행위
 - 나. 홍수 등으로 논·밭에 쌓인 흙·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 다. 경작 중인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흙을 바꾸는 행위 또는 새 흙을 넣는 행위(영리 목적으로 흙을 채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5. 주택(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제6호 및 제7호에서 같다)을 관리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용 중인 방을 나누거나 합치거나 부엌 또는 목욕탕으로 바꾸는 행위 등 가옥 내부를 개조하거나 수리하는 행위
 - 나. 지붕을 개량하거나 기둥과 벽을 수선하는 행위
 - 다. 외장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외장을 칠하는 등 외장을 꾸미는 행위
 - 라. 내벽 또는 외벽에 창문을 설치하는 행위

마. 외벽 기둥에 차양을 달거나 수리하는 행위

바. 외장과 담장 사이에 차양을 달아 헛간으로 사용하는 행위

사.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축대(옹벽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행위

아. 주택부지 내에 우물을 파거나 장독대(광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행위

6. 주택이 아닌 건축물(도시자연공원구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소유한 건축물로 한정한다)을 관리하는 행위로서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7.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주택의 일부를 이용하는 행위

나. 건축물의 부속건축물을 다용도시설 또는 농산물건조실(건조를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행위

8. 기존 건축물의 대지(적법하게 조성한 대지로 한정한다) 안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행위에 필요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주거생활 또는 생업유지를 위해 총중량이 50톤 이하이거나 총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인 물건을 자기 소유의 대지에 쌓아놓는 행위(제28조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9.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 및 수목진료 행위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연 락 처	(044) 201 - 3749